

의안번호	제528호
의결 연월일	2013년 9월 일 (제323회)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자	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8
----------	-----

- 발의연월일 : 2013년 8월 23일
- 발 의 자 : 이광희, 김동환, 박상필, 장병학,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의원

1. 제정이유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이 사회·경제·문화 등 인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관련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9조)
- 라.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관련부서 협의: 협의 완료

다. 예산조치: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8. 1. ~ 2013.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사항: 해당없음

마. 조례관련 의원연구과제

○ 연구과제명: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광희 의원

○ 연구기간: 2013. 3. 1. ~ 2013. 5. 31.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

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 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

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